

하남시 고시 제2019-62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) 및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1.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 1-1,2블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9. 5. 1.
하 남 시 장

☐ **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[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]**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결정(변경)도 참조

※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